

제16장 예외

제16.1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 무역), 제3장(원산지 규정), 제4장(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),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 및 제6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2. 제8장(서비스무역) 및 제9장(디지털 무역)¹의 목적상, GATS 제14조(그 각주를 포함한다)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
제16.2조 안보 예외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- 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, 또는
- 나.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- 1)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

¹ 이 항은 당사국이 디지털 제품을 상품 또는 서비스로 여기는지 여부와 무관하다.

- 2) 무기, 탄약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
- 3) 군사시설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
- 4)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, 또는

다.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「국제연합헌장」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제16.3조

과세

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²
2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.
3.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,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협약 상에 기재된 기관이다.

²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, WTO 협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또한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.1조(일반 정의)에 정의된 관세와 그 정의 중 예외 나호, 다호 및 라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.